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응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42

발의연월일: 2020. 12. 30.

발 의 자:조응천·주철현·박성준

홍기원 · 최기상 · 김회재

한준호 · 송재호 · 문진석

강준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20 22년 9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전제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(2016헌마889).

현행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외국에서 태어나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생활하거나 대한민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 취득과 이탈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 족할 수 있고, 국적선택절차에 대해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 서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국적이탈 신고를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복수국적자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외국에서 태어나 신청시까지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 적자가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 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 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, 이에 대해 국적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공평성 을 확보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여 복수국적자의 기본 권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14조 및 제22조 등).
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.
- 1. 외국에서 출생하였으나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주된 생활근거를 장기간 외국에 두고 생활해 온 경우
- 2.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이 없고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는 경우

제14조제3항(종전의 제2항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, 절차와"를 "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,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요건 및 절차와"로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, 제2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.
- 제22조를 23조로 하고,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2조(국적심의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를 둔다.
 - 1.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 - 2.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
 - 3. 제14조의3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국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 - ② 국적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의2를 같이 신설한다.
- 제22조의2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국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 개정규정

은 이 법 시행 후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

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14조(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 | 제14조(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 |
| 건 및 절차) ① (생 략) | 건 및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|
| |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 |
| | 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|
| | 복수국적자로서 다음 각 호의 |
| |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 |
| |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 내 |
| | 에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하지 |
| |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소명하 |
| | 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 |
| | 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 |
| | 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 |
| | 를 신청할 수 있다. |
| | 1. 외국에서 출생하였으나 대한 |
| | 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|
| | 주된 생활근거를 장기간 외국 |
| | 에 두고 생활해 온 경우 |
| | 2.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였 |
| | 으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이 |
| | 없고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는 |
| | <u>경우</u> |
| ②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| ③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|

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<신 설>

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, 제2항 에 따라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.

<u>④ 제1항에</u> 따른 신고 및 수리, 의 요건, 절차와 그 밖에 필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요건 및 절차와-----

> 제22조(국적심의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 심의위원회를 둔다.

- <u>1. 제7조제1</u>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- 2.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 국 국적의 이탈 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
- 3. 제14조의3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국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적심의위 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| | ② 국적심의위원회의 위원 구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|
| |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
| <u><신 설></u> | 제22조의2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 |
| | 원 의제) 국적심의위원회의 위 |
| | 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|
| |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 |
| |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 |
| |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|
| <u>제22조</u> (권한의 위임) (생 략) | <u>제23조</u> (권한의 위임) (현행 제22 |
| | 조와 같음) |